



FairSoftware.Cloud

# 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원칙

## 10대 원칙

**1** 라이선싱 조건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라이선싱 조건은 언제나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고객이 신속하게 라이선싱 비용을 산출하고 쉽게 의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모호하거나 오해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라이선싱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청구하거나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라이선서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추가적인 라이선싱 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

**2** 종래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다. 고객이 온프레미스(on-premises)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동일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의 중복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이 라이선스받은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그리고 고객이 선택한 클라우드 제공자를 통해 실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라이선싱 조건이나 추가 비용은 부과할 수 없다.

**3** 고객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클라우드에서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다. 고객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통상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온프레미스(on-premises) 소프트웨어"라 함)라면 고객이 선택한 클라우드에서도 추가적인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하드웨어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고객이 안전한 클라우드 자원에서 워크로드(workloads)를 실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클라우드 고객이 전용 하드웨어에서만 판매자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한적 라이선싱 조건은 고객의 효율성을 박탈하며 클라우드 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5** 클라우드 선택에 따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제공자의 클라우드 상품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증가되거나 과도한 소프트웨어 감사의 실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수수료의 인상 등을 통해 불리한 조치나 보복을 할 수 없다.

**6** 상호운용가능한 디렉토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의 이동을 차단하지 않는다. 디렉토리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사용자를 생성, 확인, 관리, 인증하고 권한있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기업의 IT 환경 운영 방식의 근간이 된다. 디렉토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판매자는 사용자 정보를 기타 본인확인 서비스와 비차별적으로 연동 및 인증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오픈 스탠다드)을 지원하고 고객이 디렉토리 솔루션에 구속되어 제공자를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

**7** 클라우드 상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수수료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 소프트웨어에 상이한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 설치 장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제3자 관리의 데이터 센터, 제3자로부터 대여한 컴퓨터 또는 클라우드 등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따라 소프트웨어 가격을 차별할 수 없다.

**8** 소프트웨어의 허용되는 용도는 신뢰가능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법률상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래 고객에게 허용된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중대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는 특히 고객이 그러한 용도에 의존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9** 라이선스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소프트웨어 용도를 포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고객이 자신이 의도한 소프트웨어 용도를 포함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가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오인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특히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그러한 추가 용도를 권장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10** 1공정한 소프트웨어 양도를 허용한다. 고객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재판매 및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재판매된 라이선스를 적법하게 획득한 고객에게 공정한 조건으로 지원과 패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식으로 라이선스 권리를 획득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지원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유용성을 떨어뜨리며 라이선스 이용자를 패치 누락에 따른 취약한 보안 위험에 노출시킨다.

